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2년 3월 8일
(목요일)

시사프리신문 5면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개최

‘13일 까지 7일간 일정 돌입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7일 제158회 임시회 본회를 개최하고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강북구 의원들은 제158회 임시회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구정업무계획과 조례안 심사 및 현장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군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도 함께 존중해 강북구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강북구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는 임시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158회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기

타 안전처리에 나선다.

앞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 선)는 지난 2일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도연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20일로(제4조 1호),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2월 1일로(제4조 2호) 각각 변경해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바 있다.

유영일기자

우리일보

2012년 03월 08일 목요일
010면 지역종합

ABCDEFGHIJKLMN OPQRSTUVWXYZ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개최

강북구의회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15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93주년이 되는 3·1 독립운동 재현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어린 치하를 드린다.”며 “지난 1, 2월이 강북구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계획을 실천하여 강북구 발전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단계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제도개선사항 서울시 조례 개정 성과 이뤄냈다

‘건축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날 가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는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직접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여 이루어낸 성과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문수 의원은 현행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0명 이내로 구성(제5조)되어있으며, 매 회의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9명~21명(제9조)의 위원을 지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선정 시 특정 분야의 이익이나 정책결정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 할 경우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현행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것을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지정하는’으로



수정하여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다수의 협의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건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위원회는 기존 위원을 순번으로 정해 참석여부를 타진한 후 참석 가능한 위원을 위원장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시행

하게 됐다.

박문수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회에 건의한 제도개선사항이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가 이루어져 매우 기쁘며 또한 대표발의를 한 신승호 시의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축행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믿음을 못주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이 건축행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영일기자

市政新聞

2012년 03월 08일 목요일 015면 자치의회

박문수 의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건인

서울시·시의회에 제도개선 지속 건의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가결된 서울시 건축조례는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직접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 이루어낸 성과이다.

박문수 의원은 현행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0명 이내로 구성(제5조)돼 있으며, 매 회의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9명~21명(제9조)의 위원을 지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위원회 선정 시 특정 분야의 이익이나 정책결정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 회의를 진행할 경우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것을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 부위원장을 포함한



박문수 의원

2인 이상의 다수의 협의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 균형있는 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건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박문수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회에 건의한 제도개선사항이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로 나타나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축행정이 주민들에게 많은 믿음을 못준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건축행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